



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PO BOX 9501 OLYMPIA WA 98507-9501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DCYF)

DCYF 수혜자 초과지불 통지서
DCYF Client Overpayment Notice

1. 수혜자 이름 및 주소

12. 우리는 귀하에게 부터 부터
까지의 금액(달러)을 초과지불했습니다.

13. 초과지불된 이유:

14. 초과 지불 사유: 수혜자 부서

해당 금액 또는 초과지불된 이유에 관한 질문은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5. 담당 직원 이름:	16. 담당 직원 전화번호:
	이메일:

A. 초과 지불받은 금액의 수표 또는 우편환(머니 오더)을 "DSHS / OFR" 앞으로 발급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SHS)
Office of Financial Recovery (OFR)
Client Enforcement Unit (CEU)
PO Box 9501 MS 45862
Olympia, WA 98507-9501

B. 채무 지불 계획에 관해 의논하려면 아래 DSHS 재무회수국, Client Enforcement Unit 으로 전화하십시오.

(360) 664-5700 (Olympia)
1-800-562-6114 (무료) 교환 16183
1-800-833-6388 (TTY 워싱턴주 교환 서비스)

C. 초과지불금을 환불하지 않으실 경우 당국은 이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료로 받는 수표에서 해당 금액을 압류하거나, 신용거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귀하의 이름으로 선취특권을 신청해 놓을 수 있으며,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압류해 갈 수 있습니다.

2. 날짜:	3. OFA / 감사 번호:
4. 결제 시스템: Select one.	
5. 보고 단위: 또는 AFRS 조직 인덱스:	
6. * 결제 시스템의 수혜자 ID 번호:	
7. 생년월일:	
8.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a. <input type="checkbox"/> SSPS. DSHS 18-399 SSPS 수혜자/공급자 초과지불 산정 시트를 첨부해야 합니다. b. <input type="checkbox"/> 비-SSPS. DSHS 18-399A 비-SSPS 수혜자/벤더/공급자 초과지불 AFRS 코딩 산정 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9. ACES AU ID 번호:	
10. 인증 번호: 라인: 집미사:	
11. **서비스 설명: ** "배수(Multiple)"에 대한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모든 지불금, 서신, 첨부문서, 전화 통화 시 수혜자 ID 번호를 사용해 주십시오.

D. 초과 지불을 포함하여 자신의 WCCC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DCYF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수혜자는 [챕터 110-03 WAC \(WAC 110-15-0280\)](#)에 의거해 행정 심의회 실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소비자의 심의회 요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소비자가 DCYF에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WAC 110-03-0060](#) 및 [110-03-0080](#)에서 설명한 대로 행정심의회청(OAH)에 제출한 서면 요청서를 DCYF에도 제출해서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의회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 P.O. Box 42489, Olympia WA 98504-2489)으로 서면 요청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2) 심의회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그 요청서에 [WAC 110-03-0050\(2\)](#)에서 설명한 정보 및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3) 소비자는 항소 결정을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의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 심의회 완료 후, OAH는 [WAC 110-03-0460](#) 및 [110-03-0480](#)에 의거해 최초 명령을 내립니다. 최초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WAC 110-03-0510](#)부터 [110-03-0550](#)에 제시된 대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최초 명령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 심사관들은 심사 요청, 최초 명령, 및 심의회 기록을 고려한 후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최종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WAC 110-03-0570](#)부터 [110-03-0580](#)에 제시된 대로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WAC 110-03-0590](#)에서 설명한 대로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행정심의회 결과로 인해 초과지불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더 이상 금융자산회수청(Office of Financial Recovery)을 통해 심의회를 실시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항소 권리는 귀하의 최종 명령서(Final Order)를 참조해주시고. 해당 부서의 변경에 따라 초과지불 금액이 증가된 경우, 귀하는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실시할 권리를 갖습니다.